

## 1. 목적

본 문서는 효성중공업(주)(이하 '회사')이 분쟁·책임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,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협력사의 동참 독려를 통해 해결 및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용어의 정의

- 2.1 '분쟁광물'이란 아프리카 10개국 (콩고민주공화국, 콩고공화국, 수단, 르완다, 브룬디, 우간다, 잠비아, 앙골라, 탄자니아, 중앙아프리카) 등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, 텅스텐, 탄탈륨, 금을 말한다.
- 2.2 '책임광물'이란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로, 코발트, 니켈, 구리, 아연, 운모를 말한다.
- 2.3 'RMAP'이란 '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'의 약자로, RMI(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;책임광물 이니셔티브)에서 주관하는 분쟁·책임광물 미사용 제련소에 대한 실사 및 보증 프로그램을 말한다.
- 2.4 '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1502조'이란 금융체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 중 분쟁광물과 관련된 조항을 말한다. 이 조항은 콩고산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자신이 이용한 광물이 콩고 분쟁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.
- 2.5 'OECD 실사지침서'란 기업이 이행함으로써 기업운영, 공급망 및 기타 사업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근로자, 인권, 환경, 뇌물수수, 소비자 및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발생할 여러 부정적 영향들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권고사항을 말한다.

## 3. 적용범위

- 3.1 본 규정은 회사의 본사, 국내/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,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3.2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, 대리점,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분쟁·책임광물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3.3 다만,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## 4. 이념

회사는 분쟁·책임광물 채굴로 인한 인권 침해,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한다.

## 5. 방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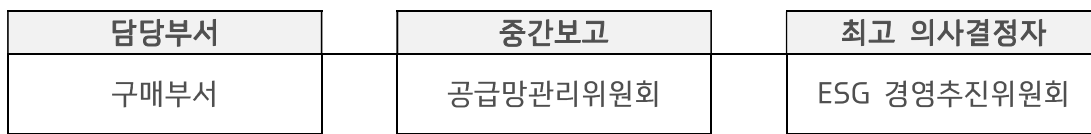
판매 자금이 전쟁에 투입되거나, 채굴 시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인권 및 환경 관련 문제가 분쟁광물로 인해 야기된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의 '도드-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1502조'와 OECD의 '실사 지침서(Due Diligence Guidance)'를 기반으로, 인권 및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구축이 의무화 되었다. 회사는 이에 따라 분쟁·책임광물과 관련한 공급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.

- 5.1 회사는 RMAP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의 광물만 취급한다.

- 5.2 회사는 협력사가 RMAP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정기교육 및 분쟁·책임 광물 관리 가이드 제공을 통해 지원한다.
- 5.3 회사는 질의서, 서면 확인 등을 통해 협력사가 분쟁·책임광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.
- 5.4 회사는 협력사의 공급망에서 분쟁·책임광물 리스크를 도출할 시, 책임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개선을 요구한다.
- 5.5 회사는 분쟁·책임광물 리스크 조사 및 개선 조치에 비협조적이거나,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.
- 5.6 회사는 매년 분쟁·책임광물 취급 현황을 공개한다.

## 6. 분쟁·책임광물 관리체계

- 6.1 회사는 본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매부서를 주관부서(이하 '주관부서')로 정하여 운영한다.
- 6.2 주관부서는 공급망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를 수행하며 중요 이슈사항 발생 시에는 공급망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, 해당 결과에 대한 중대성 평가 과정을 거쳐 파악된 주요 사항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ESG경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심의 및 의사결정을 시행한다.



## 7. 실행방안 및 목표

- 7.1 회사는 2025년까지 국내/외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계약서 내 「협력업체 행동규범 규칙」을 포함하여 분쟁·책임광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권장함으로써 분쟁·책임광물을 고의로 확보 및 공급하거나 인권 유린 단체 등에 직간접적 이익이 되는 관행을 근절한다.
- 7.2 회사는 2025년까지 신규 공급업체 등록 매뉴얼 내 분쟁·책임광물 리스크 식별 절차를 추가하고, 분쟁·책임광물 취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격 업체로 등록 및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.